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21

발의연월일: 2021. 2. 22.

발 의 자:최혜영·오영환·전혜숙

김진표 · 이탄희 · 이상헌

정춘숙 · 신현영 · 허 영

이규민 · 윤재갑 · 정청래

박홍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(이하 "중증장애인"이라 함)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.

그러나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도 지속적·포괄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16조).

법률 제 호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(이하 "중증장애인"이라 한다)에"를 "장애인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"을 "내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(장애인 건강 주치의) ① | 제16조(장애인 건강 주치의) ① - |
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장애</u> | <u>장</u> 애인 |
|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 | <u>에</u> |
| 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(이 | |
| 하 "중증장애인"이라 한다)에 | |
|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 | |
| 도를 시행할 수 있다. | |
|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| ② |
| 주치의 제도의 <u>대상이 되는 중</u> | <u>내용</u> |
| 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| |
|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| |
| 정한다. | |